

---

#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예선문제

---

2017. 9. 20.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 [문 제]

- 귀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사건(사건번호 2017가단171109)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를 각각 수행하게 될 변호사임(민사제00단독)
- 귀하는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는 [첨부 1]과 같음
-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장과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작성할 것
-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소장과 피고의 주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함(소장의 경우 [첨부 3]의 양식을, 답변서의 경우 [첨부 4]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 소장은 청구취지에 공란으로 된 부분의 액수를 청구원인의 구성에 맞게 기재하고, 원칙적으로 청구취지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 단, 주어진 ‘청구취지’에서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서면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규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등)상 쟁점만을 다룸을 원칙으로 함
  - B사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도 필요할 시 소장 및 답변서에 포함 시킬 것
- 소장 및 답변서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법률상 주장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주장은 권리의 성립요건, 근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쟁점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으면 판례의 입장에 따르되,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례의 취지를 적시한 후 이를 적절한 논거에 의하여 비판할 것

-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사실관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증명이 없다고 봄. 다만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공지의 사실 등은 원용할 수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가정하는 것은 가능함)

## [유의사항]

- 제출하는 서면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정통, 담당변호사 정보호”로 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옴음, 담당변호사 나승소”로 표기하되, 서면 자체에는 참가팀의 소속 학교/법전원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문서 제목은 ‘팀명-원고소장’, ‘팀명-피고답변서’로 작성(예 : 변론의신-원고소장.hwp, 변론의신-피고답변서.hwp)
- 서면은 각 15장 이내로 함
  - 작성 기준 :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크기 13 포인트,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여백 : 위 20mm, 아래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 각 서면의 제출기한은 2017. 10. 15.(일) 24:00까지이고, 이메일 (2017security@sangsangn.co.kr)로 제출할 것
- 이 사건 「사실관계」는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위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것으로, 실존하는 특정 인물, 기업, 단체 등과 전혀 관계없음

- 원·피고 소송대리인 모두 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만 변론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관련 자료는 온라인 개인정보 포털 [www.i-privacy.kr](http://www.i-privacy.kr),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http://www.kisa.or.kr) 등에서 찾아 활용 가능함

## [첨부 1]

### 사실관계

1. A사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온라인게임 회사이다. A사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는 청소년용에서 성인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A사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외에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채팅 서비스, 게임 뉴스, 동호회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A의 온라인 게임 회원 수는 약 110만 명에 이르지만, 최근 2년 동안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3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2. A사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토리지, 시스템, 네트워크 등 일체의 시스템운영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인 B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3. B사는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로 국외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지만, 한국에는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지 않다. A사는 B사가 제시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B사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은 체결하고 있지 않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첨부 2]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A사는 자사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여러 수탁자의 이름과 위탁업무를 공개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A사가 B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을 한 사실은 없다.
5.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2017년 6월 30일 B사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격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해커가 A사의 가상화 공간으로 침입하여 A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해커는 2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출한 개인정보를 해외 불법 개인정보 매매사이트를 통해 매각해 버리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B사에 보냈다. B사는 경영진 및 관련 책임자 내부회의 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으나, 유출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해커가 잠적하고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유출 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미루기로 하였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옴에 불안감을 느낀 해커는 2017년 7월 3일에서 7월 5일 사이에 C국의 불법 개인정보 매매사이트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매물로 내놓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 여러 명(불법 구매자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헐값에 매각되었다. 이후 해커는 잠적하였다. A사는 2017년 7월 5일 국내 언론을 통해 B사가 해킹을 당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일부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년 7월 15일 B사로부터 A사 고객의 개인정보 50만 건이 유출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 그리고 2017년 7월 15일 A사는 B사의 통보를 받은 즉시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였다.

6. 수사결과 유출 사고는 B사의 직원 D의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커는 B사의 직원 D가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D의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유도하였고, 그 결과 D의 컴퓨터에는 악성코드가 설치되었다. 이후 회사 창립기념일 직전인 2017년 6월 30일 D는 출근을 하지 않는 창립기념일 동안 시스템 운영상 긴급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된 상태로 컴퓨터를 켜 놓고 퇴근하였다. 그런데 B사의 클라우드 서버에는 일정기간 작업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시간 동안 접속이 유지되고 있었다. 해커는 D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의 서버에 접근한 뒤 B사 클라우드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A사 등 고객사의 데이터가 저장된 영역으로 이동하였고, A사에서 설치한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A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도 획득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50만 건의 A사 고객의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되었다. 유출된 데이터 항목은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일방향 암호화(Hash)된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이다.

※ A사는 MD5 방식만으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였으나, MD5 방식은 일방향 암호화하기 전의 원본을 찾아내기 쉬운 기술적인 취약점이 있어 권고하지 않는 방식임

7. D가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는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에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D는 커뮤니티로부터 악성코드를 치료할 수 있는 긴급 백신이 포함된 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D의 컴퓨터에는 무료 백신(안티바이러스)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받은 긴급 백신은 실행시키지 않았다.
8. B사는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하지만, 그곳에 사용될 운영체제와 버전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사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A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버전은 취약점이 발견되어, 운영체제 개발사가 운영체제를 구매하여 쓰고 있는 A사 등 고객사에 해당 운영체제 버전의 취약점 및 패치 방법에 대해서 통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A사는 통지를 받은 시기가 게임 이용자가 많은 연휴 기간이라 데이터 베이스를 일시에 중단할 수 없어 보안패치 적용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다.
9. A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A사의 게임 이용자 중 E는 2017년 7월 16일 새벽 2시경 자신의 게임 계정에서 시중 가격 5,0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탈취당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F는 2017년 7월 21일 광고성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누군가 성인물 사이트의 회원 가입에 이용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회원 가입 일자는 2017년 7월 15일로 확인되었다.
10. 이에 E와 F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범무법인 정통’에 소송을 위임하였고, ‘정보호’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 E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5,500만 원(게임 아이템 탈취로 인한 재산상 손해 5,0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이고, F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300만 원(위자료 300만 원)이다. ‘정보호’ 변호사는 A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손해배상 및 그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청구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 제1항 중 2개 조항에 근거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행하여졌다.

## [첨부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서(일부 발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급사업자(B사)와 이용사업자(A사) 간 계약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B사(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A사(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 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급사업자” 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사업자” 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최종이용자” 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 정보” 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중 략)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중 략)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중 략)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신청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략)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 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 략)

##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9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20조(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여 월 가용률(아래 정의)구간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장애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조 제 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 장애시간 :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회사가 장애 상황을 해소하여 장애 조치가 완료된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회사가 장애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고객의 추가 조치가 지연되어 장애가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 시간은 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②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 월 가용률(%)=100 \* [1 -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시간(분)의 합/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분)}]

\*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 해당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은 해당 기간 적용)간 월 평균 청구 금액

가용율 기준	손해배상
가용률 99.9% 미만 99.5% 이상	이용 요금의 10%
가용률 99.5% 미만 99.0% 이상	이용 요금의 20%
가용률 99.0% 미만	이용 요금의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특별손해의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중 략)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해지의 경우

(중 략)

5.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중 략)

**제23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략)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2017. O. O.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000  
A사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000  
B사

대표자 : 대표이사 김대표 (인)    대표자 : 대표이사 이대표 (인)

### [첨부 3]

#### 소 장

원고 1. E

안양시 000

2. F

고양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통

담당변호사 정보호

피고 주식회사 A

서울시 강남구 000

대표이사 김대표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E에게 원, 원고 F에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E에게 [ ]원, 원고 F에게 [ ]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기초사실 (생략)
2. 주위적 청구원인
3. 예비적 청구원인
4. 결론

2017. 8. 3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통  
담당변호사 정보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첨부 4]

### 답 변 서

사 건 2017가단171109 손해배상  
원 고 E, F  
피 고 주식회사 A  
서울시 강남구 000  
대표이사 김대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옴음  
담당변호사 나승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생략)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4. 결론

2017. 9. 15.

피고 소송대리인    범무법인 옴음  
                                  담당변호사 나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00단독 귀중